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1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2.

복지문화 위원회  
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2.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서민우 의원 등 8명
- 발의일자: 2024. 2. 2.(금)
- 회부일자: 2024. 2. 2.(금)
- 검토기간: 2024. 2. 5.(월) ~ 2. 8.(목)

## 2. 개정이유

- 달서구에서 매년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사후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, 평가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·보완 대책을 수립 함으로써 축제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함(안 제9조)
- 나. 의견청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추가함(안 제15조)
- 다.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추가함(안 제17조 및 안 별표)
- 라.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항목을 추가함(안 제19조)

## 4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고,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, 축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축제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2023년 현재 2일 이상 계속되는 지역축제가 1,129개에 이르고, 이중 대구광역시에 39개 축제, 달서구에는 장미꽃필 무렵, 선사문화체험축제, 희망달서 큰 잔치 등 3개 축제가 있음. 이외에 달서구 홈페이지에 약 15개 이상의 축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음.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지역축제가 점차 증가하면서 축제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축제의 효율적 운영 및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달서구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축제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, 축제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정책적 시의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올바른 축제 평가를 위해서는 축제 성격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축제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조문의 구성상 안 제9조제2항 제2문 중 “하고,”를 “한다.”로 하고, 제3문 “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.”를 삭제하는 수정이 필요함.

○ 수정의견

안 제9조제2항 제2문 중 “하고,”를 “한다.”로 하고, 제3문 “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.”를 삭제한다.

개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국장으로 <u>하고</u>, <u>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③·④ &lt;생략&gt;</p>	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국장으로 <u>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③·④ &lt;개정안과 같음&gt;</p>

# 관계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~4. <생략>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~다. <생략>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<생략>

6.·7. <생략>

## □ 지역문화진흥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